

#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17) 상정
- 제15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17) 원안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박 상 설)

가. 제안이유

- 우리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현재 8종류가 있으나 개별조례에 따라 각각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징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징물의 종류 및 관리부서를 정함.(안 제3조)
  - 기(市旗), 문장, 휘장 → 총무업무담당과
  - 시의 나무, 시의 꽃, 시의 새, 시의 과일, 시민의 노래 → 문화예술 업무담당과
  - 심벌마크, 시의 브랜드, 캐릭터(판타, 시아)→ 도시디자인업무담당과
- 시기, 문장·휘장, 브랜드 기의 게양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상징물의 관리 및 관리사업과 사용승인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상징물관리위원회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상징물별로 사무 담당부서의 지정 사유는	<input type="radio"/> 상징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를 지정함.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없음

#### 나. 반대토론

없음

### 5. 심사결과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휘장, 심벌마크, 시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노래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문장, 철인, 휘장: 별표 2
3. 시의 나무(복숭아나무), 시의 꽃(복숭아 꽃), 시의 새(보라매), 시의 과일(복숭아): 별표 3
4. 심벌마크: 별표 4
5. 시의 브랜드(판타지아): 별표 5
6. 시의 브랜드 기: 별표 6
7. 시의 캐릭터(판타, 시아): 별표 7
8. 시민의 노래: 별표 8

② 상징물의 관리부서는 별표 9와 같다.

제4조(시기) ① 시기는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휘장)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상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③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3. 그 밖에 시장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브랜드기) ① 시장은 시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하여 시의 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의 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부천시 개성형성 디자인 메뉴얼」 및 「부천시 BI 디자인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시의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의 관리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

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상징물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한다.

③ 시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3조제3항에 따라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징물 추가지정 및 관리) 이 조례 제정 이후 상징물을 새로이 지정 또는 제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제정하는 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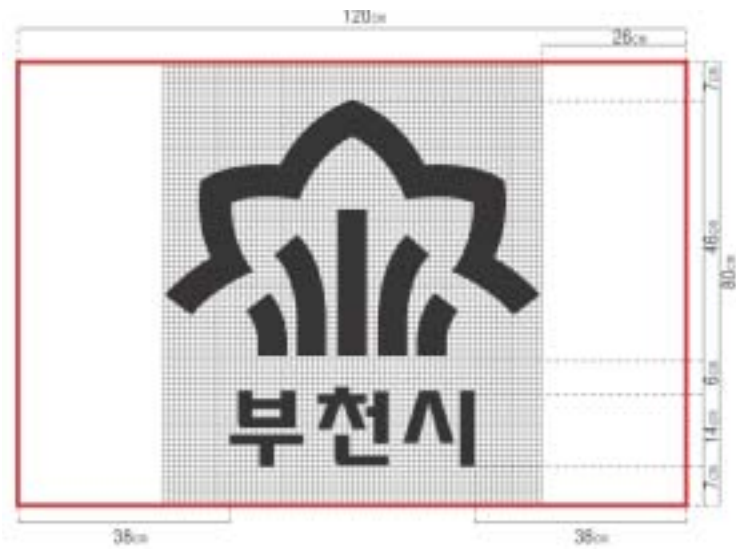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시기등조례」 및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부 천 시 기(제3조제1항 관련)



< 기 본 형 >



< 작 도 형 >

(시기 제작법)

1. 기폭은 가로 세로를 120밀리미터 80밀리미터로 한다.

2. 제작방법은 계양기일 경우 합성섬유 (T/C)등에 지정색(청색) 날염 인쇄하며, 비치용일 경우 기폭의 길이를 비례, 확대하여 지정색에 가장 가까운 우단에 금색자수를 한 후 금색 수술을 단다.
3. 도형은 시마크 원고를 활용하여 사진제판에 따른 축소, 확대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 방식이 불가피할 경우 즉 특별히 크게 확대 제작할 경우에는 제시된 비례규정(방안선에 따른 비례규정 그림 2)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4. 시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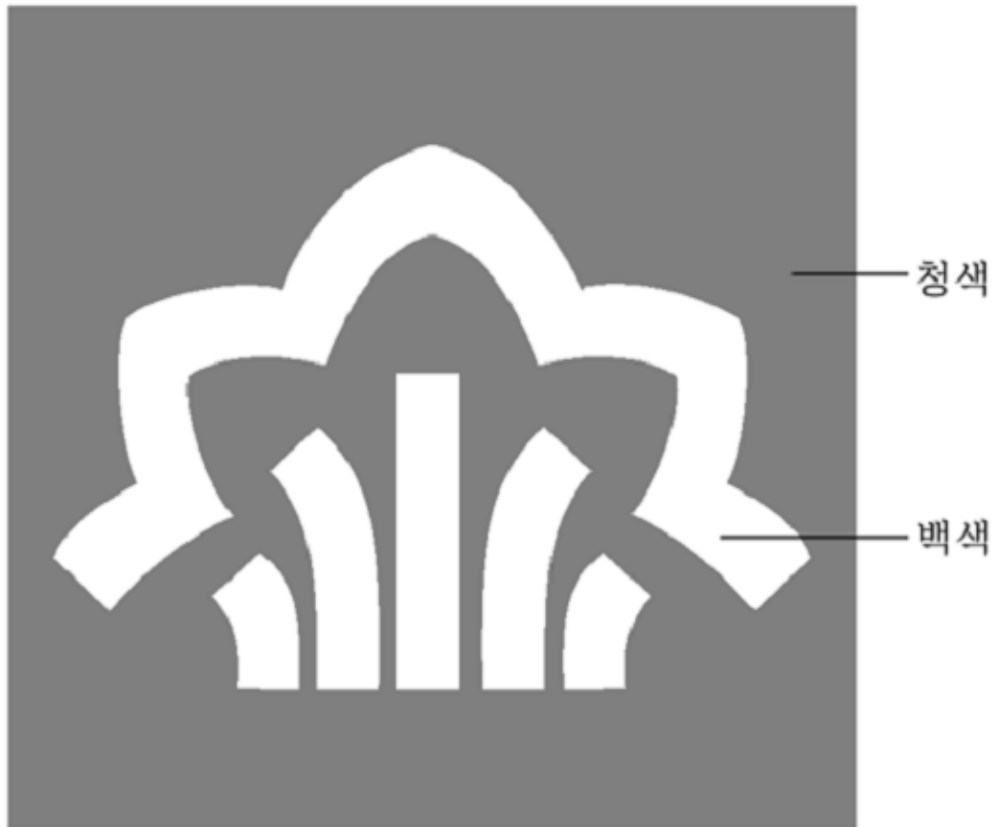
#### (시기의 의미)

1. 부천시의 고유색채인 청색바탕은 쾌적함, 젊음, 활력 등을 상징한다.
2. 전체도형은 복사꽃을 반추상적 표현방법으로 접근하여 복사꽃의 의미와 함께 다양한 의미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하학 도형으로 표현
3. 꽃 수술을 표현한 내부의 도형은 수직의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가는 형태로 표현, 도시의 확산, 발전하는 시상을 상징한다.
4. 전체도형은 삼각형꼴로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꽃잎에 의해 에워 쌓여진 아득한 도시 이미지를 반영하며 또한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5개의 산과 5개의 하천을 상징하기도 한다.



[별표 2]

문장, 철인, 휘장(제3조제1항 관련)



○ 색채와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조절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시의 나무, 시의 꽃, 시의 새, 시의 과일(제3조제1항 관련)

	<p><b>시의 나무 : 복숭아나무</b></p> <p>부천시역은 소사 복숭아로 유명했었으며 지금도 복사골 부천 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복숭아와 깊은 인연이 있음. 이런 옛 정취를 살리고자 복숭아 나무를 시목으로 지정하였음.</p>
	<p><b>시의 꽃 : 복숭아 꽃</b></p> <p>부천시에 시 꽃은 복숭아 꽃 이며 일명 복사꽃이라고도 함. 꽃말은 좋은 성품, 사랑의 노예이다. 부천시에서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복사골 예술제를 개최하여 시민 한 마당 잔치를 펼치고 있음.</p>
	<p><b>시의 새 : 보라매</b></p> <p>태어난지 1년이 채 안되는 새끼를 길들여 사냥에 쓰는 매를 보라매라고 함. 약진,비상,날렵,치밀,완벽,목표완수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p>
	<p><b>시의 과일 : 복숭아</b></p> <p>부천에서는 오래 전부터 성주산을 중심으로 야생 복숭아 나무가 심어져 있었음. 배수가 잘 되는 완경사지, 연평균 11~15℃ 정도가 되는 최적의 생육 조건 등으로 인해 우리고장의 대표 농산물임. 부천에 개량된 복숭아나무가 처음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식민시대 초기인 1900년대 초부터이며, 1925년경부터는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 부천의 복숭아는 이때부터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였음.</p>

[별표 4]

심 별 마 크(제3조제1항 관련)









(의미)

- 심별마크는 부천시가지향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집약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물로서 “부천시 CI”라고 함.
- 심별마크의 형상은 부천시의 대표적인 복사꽃을 반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각형 내부의 5개의 꽃잎은 '富'字의 갓머리와 안정적인 도시이미지를 상징하며 5개의 꽃 수술은 '川'字와 도시의 발전과 확산을 나타냄.

[별표 5]

시 의 브 랜 드(제3조제1항 관련)

		<p>- 문화 경제도시 부천 -</p> <p>영화, 만화, 음악, 예술제 등 다양하고 환상적인 고품격 명품 문화와 로봇, 금형, 조명, 부품소재 등의 첨단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 부천을 의미</p>
<p>&lt; 디자인 특징 &gt;</p>		
<p>글자 연결형</p>	<p>산업, 환경, 사람이 함께 조화롭고 행복하게 어울리는 체계적인 도시 네트워크와 유기적인 인프라를 표현</p>	
<p>리듬감 배열</p>	<p>문화도시 부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즐거움” 과 “행복선율” 을 상징함과 아울러 문화와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부천의 미래상을 표현</p>	
<p>&lt; 색상 의미 &gt;</p>		
 <p>(청 색)</p>	<p>첨단산업을 기반으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는 “경제도시 부천”</p>	
 <p>(하늘색)</p>	<p>발달된 도시 인프라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 부천”</p>	
 <p>(연두색)</p>	<p>다양하고 즐거운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부천”</p>	
 <p>(주황색)</p>	<p>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사람속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도시 부천”</p>	
 <p>(빨강색)</p>	<p>꿈과 열정, 낭만과 매력이 역동적으로 발산되는 “문화도시 부천”</p>	

[별표 6]

시 의 브 랜 드 기(제3조제1항 관련)



규 격 : 3A X 2A  
제작방법 : 지정색 컴퓨터자수  
테 두 리 : 금색수술  
재 질 : 공단 또는 벨벳

- 시의 브랜드기는 시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부천시를 공식적으로 대외에 전달하는 시각적 표상물이다.

[별표 7]

시 의 캐 릭 터(제3조제1항 관련)



판타(Fanta)    시아(Sia)

문화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도시  
를 상징하는 의미로 부천시  
의 전략산업인 로봇산업을 모티  
브로 탄생한 로봇 커플임.

[별표 8]

시 민 의 노래(제3조제1항 관련)

**부천시민의 노래**

곡사 부천시민의 노래 제정위원  
작곡 이봉순

행진박르기 ♩-400

성 주 안 기 솟 아 다 북 - 우 울 피 고  
일 자 직 들 - 리 난 먼 - 섬 의 고 들

앞 세 는 부 - 천 밭 아 - 누 한 더 건  
앞 두 세 구 비 가 는 악 - 권 의 기 살

도 늘 이 화 난 이 자 대 항 이 깃 날  
원 모 아 일 하 - 고 같 집 제 사 는

남 울 리 는 일 파 마 다 서 팔 년 - 처 세 뜻 모  
해 - 복 이 샘 솟 - 은 무 험 이 - 라 내

아 자 손 번 회 반 영 누 름 곧 앞 기

공 은 낙 된 으 모 가 구 비 가 세

[별표 9]

상징물의 관리부서(제3조제2항 관련)

상징물 명	관리부서	비고
부천시기	총무업무담당과	
문장, 철인, 휘장	총무업무담당과	
시의 나무	문화예술업무담당과	
시의 꽃	문화예술업무담당과	
시의 새	문화예술업무담당과	
시의 과일	문화예술업무담당과	
심벌마크	도시디자인업무담당과	
시의 브랜드	도시디자인업무담당과	
시의 브랜드 기	도시디자인업무담당과	
시의 캐릭터	도시디자인업무담당과	
시민의 노래	문화예술업무담당과	





[별지 제2호서식]

###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 사유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                            년            월            일 (인)		
부 천 시 장 귀하		

#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514호
의결년월일	2009. 12. 23. (제157회)

제출년월일 : 2009. 11. 1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우리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현재 8종류가 있으나 개별조례에 따라 각각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징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종류 및 관리부서를 정함.(안 제3조)

- 시기(市旗), 문장, 휘장 → 총무업무담당과
- 시의 나무, 시의 꽃, 시의 새, 시의 과일, 시민의 노래 → 문화예술업무담당과
- 심벌마크, 시의 브랜드, 캐릭터(판타, 시아)→ 도시디자인업무담당과

나. 시기, 문장·휘장, 브랜드 기의 계양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상징물의 관리 및 관리사업과 사용승인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휘장, 심벌마크, 시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노래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문장, 철인, 휘장: 별표 2
3. 시의 나무(복숭아나무), 시의 꽃(복숭아 꽃), 시의 새(보라매), 시의 과일(복숭아): 별표 3
4. 심벌마크: 별표 4
5. 시의 브랜드(판타지아): 별표 5
6. 시의 브랜드 기: 별표 6
7. 시의 캐릭터(판타, 시아): 별표 7
8. 시민의 노래: 별표 8

② 상징물의 관리부서는 별표 9와 같다.

제4조(시기) ① 시기는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휘장)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첩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첩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상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2. 시장 명의로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③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3. 그 밖에 시장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브랜드기) ① 시장은 시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하여 시의 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의 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부천시 개성형성 디자인 매뉴얼」 및 「부천시 BI 디자인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시의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의 관리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상징물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시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3조제3항에 따라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징물 추가지정 및 관리) 이 조례 제정 이후 상징물을 새로이 지정 또는 제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제정하는 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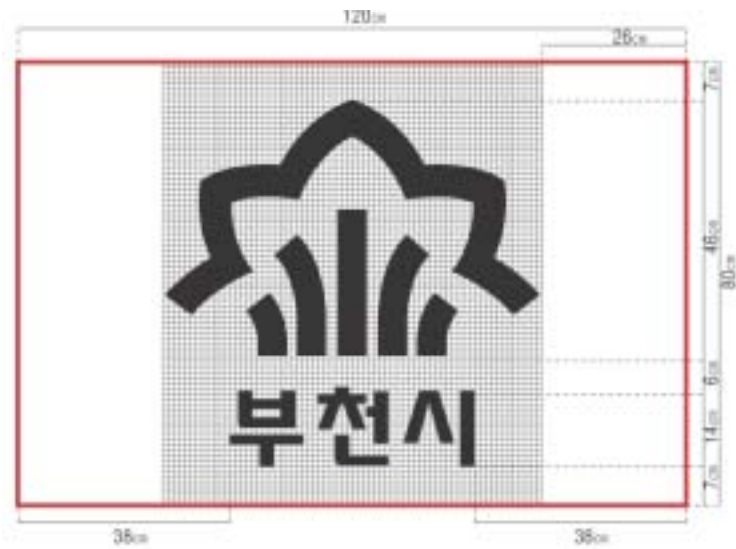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시기등조례」 및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부 천 시 기(제3조제1항 관련)



< 기 본 형 >



< 작 도 형 >

(시기 제작법)

1. 기폭은 가로 세로를 120밀리미터 80밀리미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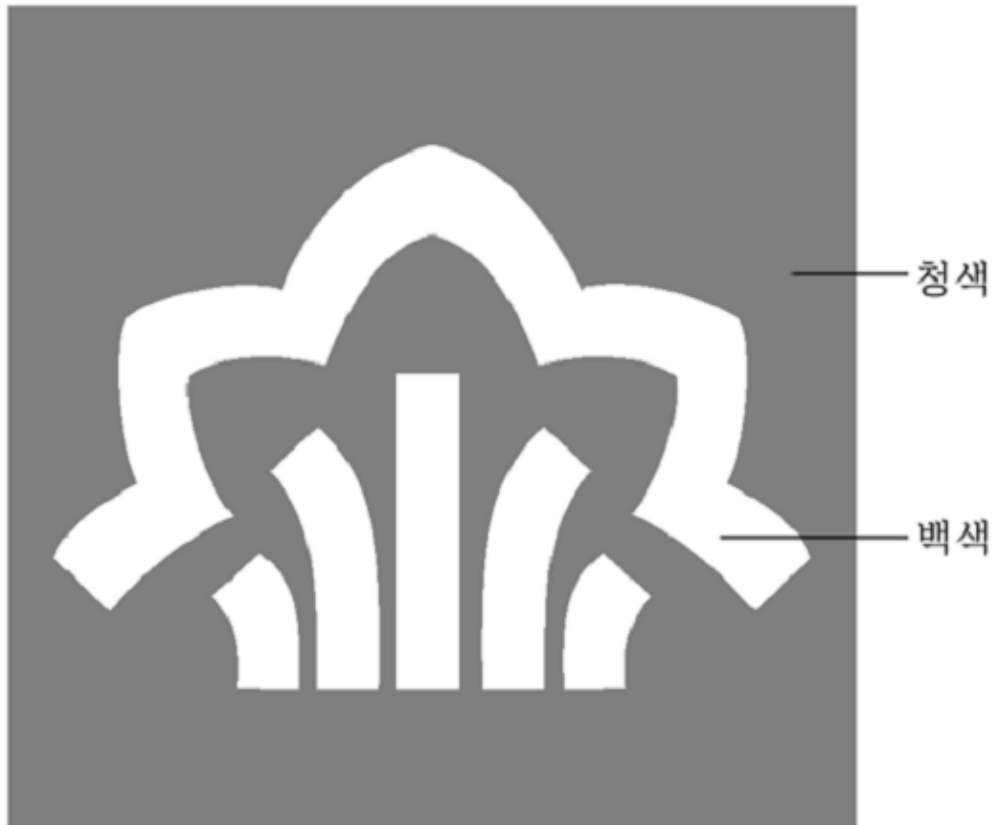
2. 제작방법은 계양기일 경우 합성섬유 (T/C)등에 지정색(청색) 날염 인쇄하며, 비치용일 경우 기폭의 길이를 비례, 확대하여 지정색에 가장 가까운 우단에 금색자수를 한 후 금색 수술을 단다.
3. 도형은 시마크 원고를 활용하여 사진제판에 따른 축소, 확대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 방식이 불가피할 경우 즉 특별히 크게 확대 제작할 경우에는 제시된 비례규정(방안선에 따른 비례규정 그림 2)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4. 시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시기의 의미)

1. 부천시의 고유색채인 청색바탕은 쾌적함, 젊음, 활력 등을 상징한다.
2. 전체도형은 복사꽃을 반추상적 표현방법으로 접근하여 복사꽃의 의미와 함께 다양한 의미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하학 도형으로 표현
3. 꽃 수술을 표현한 내부의 도형은 수직의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가는 형태로 표현, 도시의 확산, 발전하는 시상을 상징한다.
4. 전체도형은 삼각형꼴로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꽃잎에 의해 에워 쌓여진 아득한 도시 이미지를 반영하며 또한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5개의 산과 5개의 하천을 상징하기도 한다.

[별표 2]





문장, 철인, 휘장(제3조제1항 관련)



○ 색채와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조절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시의 나무, 시의 꽃, 시의 새, 시의 과일(제3조제1항 관련)

	<p><b>시의 나무 : 복숭아나무</b></p> <p>부천시역은 소사 복숭아로 유명했었으며 지금도 복사골 부천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복숭아와 깊은 인연이 있음. 이런 옛 정취를 살리고자 복숭아 나무를 시목으로 지정하였음.</p>
	<p><b>시의 꽃 : 복숭아 꽃</b></p> <p>부천시에 시 꽃은 복숭아 꽃이며 일명 복사꽃이라고도 함. 꽃말은 좋은 성품, 사랑의 노예이다. 부천시에서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복사골 예술제를 개최하여 시민 한 마당 잔치를 펼치고 있음.</p>
	<p><b>시의 새 : 보라매</b></p> <p>태어난지 1년이 채 안되는 새끼를 길들여 사냥에 쓰는 매를 보라매라고 함. 약진,비상,날렵,치밀,완벽,목표완수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p>
	<p><b>시의 과일 : 복숭아</b></p> <p>부천에서는 오래 전부터 성주산을 중심으로 야생 복숭아나무가 심어져 있었음. 배수가 잘 되는 완경사지, 연평균 11~15℃ 정도가 되는 최적의 생육 조건 등으로 인해 우리고장의 대표 농산물임. 부천에 개량된 복숭아나무가 처음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식민시대 초기인 1900년대 초부터이며, 1925년경부터는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 부천의 복숭아는 이때부터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였음.</p>

[별표 4]

심 별 마 크(제3조제1항 관련)









(의미)

- 심별마크는 부천시가지향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집약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물로서 “부천시 CI”라고 함.
- 심별마크의 형상은 부천시의 대표적인 복사꽃을 반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각형 내부의 5개의 꽃잎은 '富'字의 갓머리와 안정적인 도시이미지를 상징하며 5개의 꽃 수술은 '川'字와 도시의 발전과 확산을 나타냄.

[별표 5]

시 의 브 랜 드(제3조제1항 관련)

		<p>- 문화 경제도시 부천 -</p> <p>영화, 만화, 음악, 예술제 등 다양하고 환상적인 고품격 명품 문화와 로봇, 금형, 조명, 부품소재 등의 첨단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 부천을 의미</p>
<p>&lt; 디자인 특징 &gt;</p>		
<p>글자 연결형</p>	<p>산업, 환경, 사람이 함께 조화롭고 행복하게 어울리는 체계적인 도시 네트워크와 유기적인 인프라를 표현</p>	
<p>리듬감 배열</p>	<p>문화도시 부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즐거움” 과 “행복선율” 을 상징함과 아울러 문화와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부천의 미래상을 표현</p>	
<p>&lt; 색상 의미 &gt;</p>		
 <p>(청 색)</p>	<p>첨단산업을 기반으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는 “경제도시 부천”</p>	
 <p>(하늘색)</p>	<p>발달된 도시 인프라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 부천”</p>	
 <p>(연두색)</p>	<p>다양하고 즐거운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부천”</p>	
 <p>(주황색)</p>	<p>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사람속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도시 부천”</p>	
 <p>(빨강색)</p>	<p>꿈과 열정, 낭만과 매력이 역동적으로 발산되는 “문화도시 부천”</p>	



[별표 6]

시의 브랜드기(제3조제1항 관련)



규 격 : 3A X 2A  
제작방법 : 지정색 컴퓨터자수  
테 두 리 : 금색수술  
재 질 : 공단 또는 벨벳

- 시의 브랜드기는 시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부천시를 공식적으로 대외에 전달하는 시각적 표상물이다.

[별표 7]

시 의 캐 릭 터(제3조제1항 관련)



판타(Fanta)    시아(Sia)

문화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를 상징하는 의미로 부천시의 전략 산업인 로봇산업을 모티브로 탄생한 로봇 커플임.

[별표 8]

시 민 의 노래(제3조제1항 관련)

**부천시민의 노래**

곡사 부천시민의 노래 제정위원  
작곡 이봉순

행진박르기 ♩-400

성 주 안 기 솟 아 다 북 - 우 울 피 고  
일 자 직 들 - 리 난 먼 - 섬 의 고 들

앞 세 는 부 - 천 밀 아 - 누 한 더 건  
앞 두 세 구 비 가 는 악 - 권 의 기 살

도 늘 이 화 난 이 자 대 항 이 깃 날  
원 모 아 일 하 - 고 같 집 제 사 는

남 울 리 는 일 파 마 다 서 팔 년 - 처 세 뜻 모  
해 - 복 이 샘 솟 - 은 무 험 이 - 라 내

아 자 손 번 회 반 영 누 름 곧 앞 기

공 은 낙 된 으 모 가 구 비 가 세

[별표 9]

상징물의 관리부서(제3조제2항 관련)

상징물 명	관리부서	비고
부천시기	총무업무담당과	
문장, 철인, 휘장	총무업무담당과	
시의 나무	문화예술업무담당과	
시의 꽃	문화예술업무담당과	
시의 새	문화예술업무담당과	
시의 과일	문화예술업무담당과	
심벌마크	도시디자인업무담당과	
시의 브랜드	도시디자인업무담당과	
시의 브랜드 기	도시디자인업무담당과	
시의 캐릭터	도시디자인업무담당과	
시민의 노래	문화예술업무담당과	

[별지 제1호서식]

###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		
<p>「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신 청 인 :  (인)</p> <p><b>부 천 시 장 귀하</b></p>		
[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 사유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		년 월 일 (인)
부 천 시 장 귀하		

(현행 조례)

부천시기등조례

제정 1977. 02. 28 조례 제242호

개정 1984. 02. 13 조례 제650호

개정 1991. 04. 13 조례 제113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를 상징하는 부천시 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천시기) ①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1984.02.13>

②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계양한다.

제3조 (문장) 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84.02.13>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로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 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84.02.13>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2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계작 사용중인 시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4.02.13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4.13 조례 제11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기등은 이 조례에 의한 새로운 시기등을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수 있다

##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

제정 1991. 02. 12 조례 제1100호

개정 1996. 07. 18 조례 제1435호

개정 1997. 08. 01 조례 제1525호

개정 2003. 01. 15 조례 제191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도시개성형성을 위한 제반 상징물의 개발과 관리로 부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향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도시개성형성계획(City Identity Program)이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한 정책하에 도시의 기능과 특징을 통한 정체성을 부각시켜 개성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상징물의 관리운영등 도시개성형성을 위한 일련의 계획을 칭한다.

제3조 (관리대상) 부천시의 개성형성계획 관리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심의) 시장은 도시개성형성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시개성형성의 창조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개성형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시개성형성 시책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삭제 2003. 1. 15)

부칙<1991. 2. 12 조례 제1100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관리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둘 수 있다.

부칙<1996. 2. 29 조례 제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7. 18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8. 1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 15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